

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 2005.8.4>

공고 제 호

정·부위원장호선포고

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 제5조(제2항)·(제4항)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(정)·(부)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호선했기에 공고합니다.

| 직 위 | 성 명 | 생년월일 | 주 소 | 직 업 | 호선일자 | 비 고 |
|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|
|     |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|
|     |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|

년 월 일

〇〇선거관리위원회 [인]